

< 2020년도 제4차 규정 제·개정(안) 현황 >

소관부서	공고 NO	규정명	제정	개정	폐지	비고
교무처	28	학과구조개선에 따른 교원신분에 대한 규정	○			P.1
학생취업처	29	[4-4-2] 학생생활지도규정		○		P.7
	30	[4-4-9] 학생상담실 운영규정		○		P.14
계			1	2		

학과구조개선에 따른 교원 신분에 대한 규정 제정(안)

1. 제안이유

「학과구조개선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9조, 제11조에 따라 정원 조정이 시행되거나 모집 중단된 학과의 교원 신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

- 관련조항 : 제2조(적용범위)

나. 신청 종류와 제외대상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관련조항 : 제3조(전과신청), 제4조(전과신청 제외대상), 제6조(전공전환 전과 교원의 의무)

다. 전과 절차에 대한 사항

- 관련조항 : 제5조(전과절차)

라. 면직에 관한 사항

- 관련조항 : 제7조(직권면직)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정관, 교원인사규정, 학과구조개선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없음(관계부서 및 사전 협의 부서 있을시 작성)

라. 기 타 : 없음

붙임 : 학과구조개선에 따른 교원 신분에 대한 규정 제정(안) 전문 1부. 끝.

학과구조개선에 따른 교원 신분에 대한 규정

제정 2020.00.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과구조개선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9조, 제11조에 따라 정원조정이 시행되거나 모집 중단된 학과의 교원 신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1. 학과 정원조정 및 통폐합·변경으로 책임 강의 시수를 채울 수 없는 교원
2. 모집 중단된 학과에 재직 중인 교원

제3조(전과 신청) 제2조에 해당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과 신청을 할 수 있다.

1. 유사전공학과 전과 신청
2. 전공전환 전과 신청

제4조(전과 신청 제외대상)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과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퇴직일이 3년 미만인 교원
 2. 기타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징계처분 등을 고려하여 전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교원
- ② 다만, 전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전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전과 절차) ① 전과 신청을 원하는 교원은 학과구조개선안이 확정되고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장은 전과 신청서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 요청한다.

③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평정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다.

④ 교무처장은 심사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최종 결과를 이사회 승인 후 신청 교원에게 통보한다.

제6조(전공전환 전과 교원의 의무) ① 전공전환 전과 교원은 해당학과와 관련된 학위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② 석사과정 이상에 등록한 후 등록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고, 등록 후 3년 이내에 해당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취득이 완료된 경우에는 석사학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대한 증빙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공전환 전과 교원은 학위 이수 기간 중 책임시수 이상 강의를 해야 한다.

제7조(직권면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6조 및 정관 제47조에 의거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결에 따라 직권면직 처분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전과 신청을 신청하지 않은 교원
2. 전공전환을 위한 석사학위 취득 기한을 초과한 교원, 또는 석사학위 취득 계획과 다른 학위나 전공을 취득한 교원
3.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 전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교원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학년도(2019학년도 평가)학과구조개선 평가결과에 따라 적용된 학과교원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교원 전과 신청서

기본사항

현소속학과		직 급	
성 명	(인)	생년 월일	최초 임용일

학력사항

구분	학교명	전공명	학위명	비고 (관련 자격증 등)
학사				
석사				
박사				

신청사항

전과유형	유사전공학과	[]	전공전환	[]
전과신청 학과명	1순위:	신청 학과 강의 가능 교과목	1 순위	I:
				II:
				III:
				IV:
	2순위:(미희망시 작성불요)		2 순위	I:
				II:
				III:
				IV:
추가 학위 취득 계획 (전공전환 신청자 작성)				
구분	학교명	전공명	취득예정기간	비고

학과발전계획(특성화, 충원율, 취업률, 입시전략 상세히 기재)

- 1순위 전과 희망학과명: _____ 학과

구분	발전계획
특성화	
충원율	
취업률	
입시전략	
기타사항	

□ 학과발전계획(특성화, 충원율, 취업률, 입시전략 상세히 기재)

- 2순위 전과 희망학과명: _____ 학과(2순위 없을시 미작성)

구분	발전계획
특성화	
충원율	
취업율	
입시전략	
기타사항	

위와 같이 전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학생생활지도규정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학생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진행했던 9조 7항의 ‘학생상담실 운영 및 예산편성, 결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기능 중 ‘학생상담실 운영 및 예산편성, 결산에 관한 사항’ 삭제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학생상담실 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없음(관계부서 및 사전 협의 부서 있을시 작성)

라. 기 타 : 없음

붙임 1. 학생생활지도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학생생활지도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학생생활지도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6. (생 략)</p> <p>7. <u>학생상담실 운영 및 예산편성, 결산에 관한 사항</u></p>	<p>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6.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red;"><삭 제></p>

학생생활지도규정

제정 2002. 3. 1 개정 2010. 7. 1
개정 2017. 8.14 개정 2020.00.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생의 개별 활동 및 학생회 활동을 지도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생증

제2조(교부) 본 대학교에 입학수속을 완료한 학생은 즉시 학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제3조(휴대) 학생은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학생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자는 수강 및 수업을 금할 수 있으며 도서 열람실의 출입을 금한다. 또한 본 대학교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학생은 반드시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분실)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학생취업처**에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반납) 학생증은 졸업, 퇴학, 제적 및 유효기간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생취업처**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제6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재학생의 건전한 학생활동과 조화로운 인격향상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대학생활을 지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7.8.14.]

제7조(구성) 본 대학교의 학생지도 및 동아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학생취업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7명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학생취업처** 직원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7.8.14.]

제8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7.8.14.]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2. 학생자치활동 지도에 관한 사항
3. 지도교수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제반 사항
4. 학생상벌 및 기타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5. 학생회 조직 및 편제에 관한 사항
6. 동아리 승인 및 취소, 지원금 분류에 관한 사항
7. <삭제 2020.00.00.>

8. 기타 관련사항

[본조 신설 2017.8.14.]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 신설 2017.8.14.]

제11조(결과보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본조 신설 2017.8.14.]

제4장 집회 및 행사

제12조(집회 및 행사) ① 학내의 모든 집회 및 행사는 반드시 실시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해서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생취업처**에 제출,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학과 단위 행사는 학과장을 경유해서 **학생취업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집회 행사 승인 신청서
2. 세부 계획 및 예산서(필요한 경우에 한함)
3. 관련된 유인물

② 학내의 모든 집회 및 행사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집회 및 행사는 승인된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종료 후 3일 내에 실시 결과를 **학생취업처**에 보고한다.

④ 집회 및 행사와 관련하여

1. 외부 인사를 초청하고자 할 때에는 초청 승인 신청서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생취업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사회단체로부터 후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후원의회 승인신청서를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생취업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학생의 집회 및 행사가 그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고 학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50조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5장 유인물 및 간행물

제13조(유인물) ① 각종 유인물(프린트 및 인쇄물)을 제작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취업처**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내외의 광고 및 유인물을 제작 배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다음의 서류를 **학생취업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광고문안 1부.
2. 유인물 5부. 단, 집회·행사에 관련된 모든 광고 및 유인물의 게시배부는 집회행사 승인에 가름한다.

제14조(간행물) 총학생회 각 부서, 각 단체, 각 학과에서 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 다음 각 항에 의한다.

1. 간행물을 편집 및 인쇄 배부하는 전 과정에서 총장이 임명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다음의 서류를 구비해서 계열(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생취업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간행물 발간 승인신청서

나. 편집학생명단

다. 발간계획서

3. 발간된 간행물을 배부할 때에는 신청서를 지도교수 또는 계열(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생취업처**에 제출한다.
4. 간행물은 승인된 목적 및 내용 이외의 사항을 수록할 수 없다.
5. 편집장은 이수성적 평점평균 B이상인 자로서 정학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제6장 대외행사

제15조(참가절차) 학생이 대외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는 관련서류를 첨부하고 사전에 지도교수를 경유해서 **학생취업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포상

제16조(포상) 학칙 제 49조에 의거한 포상은 총장이 이를 수여하며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포상의 구분) 포상은 성적우수상, 공로상, 인성상, 기타부문으로 구분하고, 성적우수상은 전체 수석, 과수석으로, 공로상은 최우수 공로, 우수 공로, 공로로, 인성상은 선행, 사회봉사로 세분한다.
<개정 2017.8.14.>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이외의 표창을 할 수 있다.

1. 성적우수상<개정 2017.8.14.>

가. 전체수석 : 전체학기 학업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로 하되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나. 학과수석 : 전체학기 학업성적이 해당학과에서 가장 우수한 자로 한다.<개정 2017.8.14.>

2. 공로상<개정 2017.8.14.>

가. 최우수공로 : 재학 중 본 대학교 설립이념과 교육목적 구현을 위하여 그 공로가 현저한 자로 한다.<개정 2017.8.14.>

나. 우수공로 : 재학 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됨으로써 본 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로 한다.<개정 2017.8.14.>

다. 공로 : 재학 중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됨으로써 본 대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개정 2017.8.14.>

3. 인성상<신설 2017.8.14.>

가. 선행부문 : 재학 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내·외에서 선행을 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로 한다.

나. 사회봉사부문 : 재학 중 품행이 방정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곳은일에도 솔선수범하여 이웃과 더불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 한다.

4. 기타부문<신설 2017.8.14.>

제8장 징계

제18조(징계의 구분) 학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생의 본분을 이탈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학생징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2017.8.14.>

1. 근신

2. 정학(유기, 무기)

3. 제적

제19조(근신) 근신은 3일 이상 7일 이내로 하되, 등교수업과 특별지도를 받는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학생은 근신에 처한다.

1. 강의실이나 금연지역 내 흡연자 및 학내환경을 고의로 더럽힌 자.
2. 학내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한자.
3.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을 무단 부착하거나 지정장소 외에 부착하여 수업 환경을 훼손 한 자
4. 단체행사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대학당국의 지시를 고의로 위반한 자
5. 학생증을 이용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자
6. 인터넷 및 유인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한 자
7. 기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이에 준 하는 행위로 인정된 자

제20조(유기정학) 유기정학은 8일 이상 15일 이내로 수업을 정지하고 이 기간 동안 특별지도를 받는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유기정학에 처한다.

1. 개전의 정이 없이 제19조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2.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는 자
3. 학우에게 협박 또는 폭행을 하는 자
4. 교직원에게 불손한 행위를 하거나 교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자
5. 고의로 수업을 방해하는 자
6. 기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된 자

제21조(무기정학) 무기정학은 기한을 정함이 없이 수업을 정지하고 특별지도를 받으며, 총장이 조기 해별조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15일이 경과한 뒤에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무기정학에 처한다.

1. 제20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타인의 물품 또는 금품을 절취하거나 학생 자물비를 유용한 자
3. 불법 집회를 주도하거나 집회에 참가하여 불법 유인물을 배포한 자
4. 교직원을 폭행한 자
5. 학우의 집단폭행을 주도한 자
6. 제증명 또는 서류를 위조·변조한 자
7. 성적모욕을 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되게 한 자
8. 고의로 학교시설 및 교구를 파손하거나 허가 없이 이를 외부로 반출한 자
9. 폭행으로 인하여 학우에게 2주이상의 치료를 요하게 한 자
10. 타인의 ID 및 개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명예를 훼손하게 한 자
11. 기타 학생생활지도위원회에서 위에 준하는 행위로 인정된 자

제22조(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은 제적에 처한다. 단 휴학생도 이 조항에서 제외 되지 아니한다.

1. 제21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재범한 자
2. 집단으로 등교거부나 수업거부 및 동맹휴학을 주동한 자
3. 흉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힌 자
4. 학외에서 본 대학교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5. 교직원을 폭행 상해한 자
6. 학내에서 폭력단체를 조직하거나 폭력단체에 가입을 유도한 자
7. 시험에 불응할 것을 선동하거나 동조한 자
8. 고의로 학교행정업무를 방해하거나 학교 행정실을 점거 또는 서류를 탈취한 자
9. 학생회비 및 공금을 의도적으로 유용한 자
10. 법에 의하여 금고이상의 유죄 판결된 자

11. 타인의 금품이나 물품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자
12. 학교의 문서 또는 직인을 위조하거나 도용하여 사용한 자
13. 고의로 본 대학교의 중요한 시설 또는 교구를 훔치거나 파손한 자
14.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로 학생생활지도위원회가 전원일치로 인정한 자

제23조(자격정지) 유기정학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은 자치활동이나 기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처벌일로부터 상실된다.<개정 2017.8.14.>

제24조(징계의 경감) 총장은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태도가 현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처벌을 감할 수 있다.

제25조(보칙) 이 규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포상학생의 선행을 고양하기 위해 이를 공고한다.
2. 처벌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취업처**에서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교내에 게시하며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3. **학생취업처장**, 학과장, 담당지도교수는 처벌학생을 선도·감독하여 속히 개과하도록 노력하되, 정학처벌 중에 있는 자에게는 반성문 제출, 거처의 지정, 출입 장소를 제한 할 수 있다.
4. **학생취업처장**은 유기정학 이상에 해당되는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곧 수업을 정지 시키고 조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징계일수에는 수업 정지 일을 포함한다.
5. 해벌처리는 담당지도교수가 보호자 연서로서 학생에게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다.
6. 근신 및 유기정학은 만료일로부터 해벌된 것으로 본다.
7. 무기정학은 학과장과 담당지도교수의 연명건의가 있으면 정상을 참작하여 학생생활지도위원회의 심의 없이 총장이 이를 조기해벌 할 수 있다.

제26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생활지도위원회 의결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생상담실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가. 2020.4.1.부 조직개편에 따라 규정 내 학생상담실을 학생상담센터로, 상담실장을 상담센터장으로 개정하고자 함.

나. 학생상담센터의 운영, 정책, 사업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다. 객원 상담사 초빙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상담실을 학생상담센터로 일괄 개정함

나. 학생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규정 신설

다. 객원 상담사 초빙에 관한 내용 명시

3. 주요토의과제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학생생활지도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없음(관계부서 및 사전 협의 부서 있을시 작성)

라. 기 타 : 없음

붙임 1. 학생상담실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학생상담실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1부. 끝.

학생상담실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자구수정 <u>학생상담실</u> <u>학생상담실장</u>	자구수정 <u>학생상담센터</u> <u>학생상담센터장</u>
<p>제5조(조직) ① 상담실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u>학생생활지도위원회</u>에서 심의한다.</p> <p>② 상담실에는 상담실장, 전문상담사,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두며 필요할 경우 <u>사무조교</u>를 둘 수 있다.</p>	<p>제5조(조직) ① <u>상담센터</u>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u>운영위원회</u>에서 심의한다.</p> <p>② <u>상담센터</u>에는 <u>상담센터장</u>, 전문상담사,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두며 필요할 경우 <u>사무조교</u>와 <u>직원상담사</u>를 둘 수 있다.</p>
<p>제10조(운영위원회) 위원회는 <u>학생생활지도위원회</u>로 대체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0조(운영위원회) ① <u>센터의 운영, 정책, 사업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u></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연간계획 및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u> 2. <u>상담, 심리검사, 실태조사, 홍보에 관한 사항</u> 3. <u>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u> 4. <u>외부기관과의 제휴에 관한 사항</u> 5. <u>그 밖에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u> <p>③ <u>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④ <u>위원장은 소속 부서장으로 한다.</u></p> <p>⑤ <u>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u></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⑥ <u>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u>
<신 설>	⑦ <u>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신 설>	⑧ <u>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 이 선임한다.</u>
<신 설>	⑨ <u>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u>
<신 설>	⑩ <u>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u>
<신 설>	⑪ <u>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u>
<신 설>	⑫ <u>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 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 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u>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제정 2013. 5. 1	개정 2013.10. 1
개정 2013.12. 4	개정 2014.11.19
개정 2015. 2.27	개정 2015. 9.24
개정 2016.11. 3	개정 2017.12. 6
	개정 2020.00.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이라 한다) 재학생 및 휴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력 향상, 인성함양, 가치관정립 구현 및 양성평등을 위한 **학생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상담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2.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 및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
3. 각종 심리 검사 실시 및 결과 해석
4. 대학생활 적응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개선
5. 상담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기타 상담에 관련된 활동

제3조(위치) **상담센터**는 별도 공간으로 하여 본 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비밀유지) ①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은 상담 참여여부를 선택하고, 상담계획에 참여하며, 자신의 사례기록에 대한 정보를 알고, 특정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의 사적인 정보와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 및 주변 인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도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전문인이나 관련 기관에 알릴 수 있다.

제5조(조직) ①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20.00.00.>

② **상담센터**에는 **상담센터장**, 전문상담사,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두며 필요할 경우 사무조교와 **객원상담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20.00.00.>

제6조(상담센터장) **상담센터장**은 총장이 전임 또는 초빙교원 중에서 임명하고 **상담센터** 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전문상담사) ① 전문상담사는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심리상담사 2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개정 2017.12.6.>

② 전문상담사는 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를 운영하며 **상담센터** 내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성희롱 고충상담원) ①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을 둔다.

② 성희롱 고충상담원은 인사 또는 복무 담당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성희롱 고충상담원은 전문상담사가 겸직할 수 있다.

④ 성희롱 고충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 상담 및 피해자 보호조치
3. 신고이전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 사건해결을 위한 중재
4.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에 사건의 보고 및 처리요청

제9조(실무교육) ① 전문상담사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② 고충상담원의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 정책, 사업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00.0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0.00.00.>

1. 연간계획 및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담, 심리검사, 실태조사, 홍보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외부기관과의 제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③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20.00.00.>

④ 위원장은 소속 부서장으로 한다.<신설 2020.00.00.>

⑤ 위원은 본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신설 2020.00.00.>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0.00.00.>

⑦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0.00.00.>

⑧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선임한다.<신설 2020.00.00.>

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신설 2020.00.00.>

⑩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20.00.00.>

⑪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신설 2020.00.00.>

⑫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신설 2020.00.00.>

제11조(재정) 본 상담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교 예산으로 충당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